



(재) 여의도연구소
www.ydi.or.kr

The Youido Institute

통권 16호 Vol. 2010-03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처 · 여의도연구소

발행인 · 진수희

발행일 · 2010년 5월 18일

교원노조 명단공개

국민의 알 권리 vs 개인 사생활 보호

2010년 4월19일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은 공익을 위해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현황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함.

서울남부지법은 공개금지가처분 판결(4.15)을 어길 경우 매일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및 개인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전교조의 변천 과정, 국내 여론 추이 및 실증 분석 결과 등 전교조 명단 공개의 배경에 대해 논한 후, 현행 법령 및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와 정보 비공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분석하고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전교조 명단 공개의 불가피성과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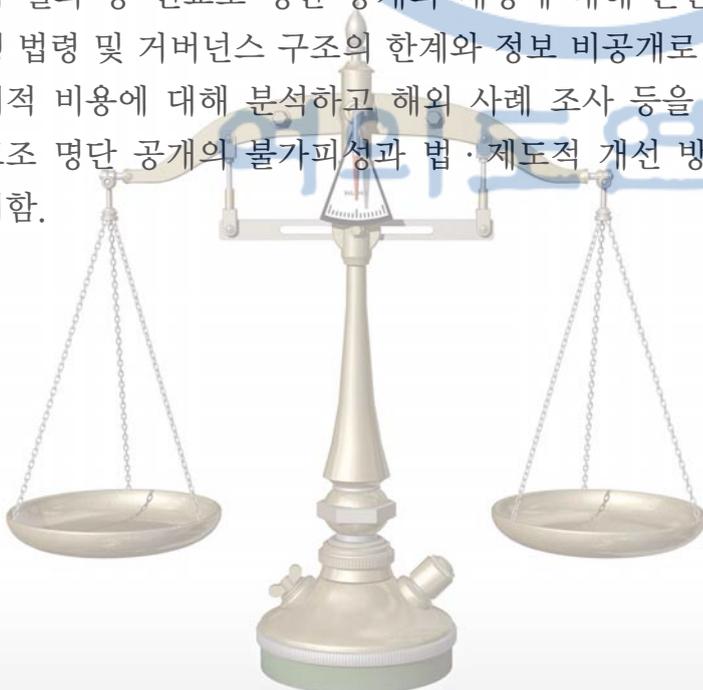
I. 교원단체 가입현황 정보 공개의 배경

II.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의 필요성

III. 결론 :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필요성

※ 첨부 자료

해외 사례 (미국과 영국)



I. 교원단체 가입현황 정보 공개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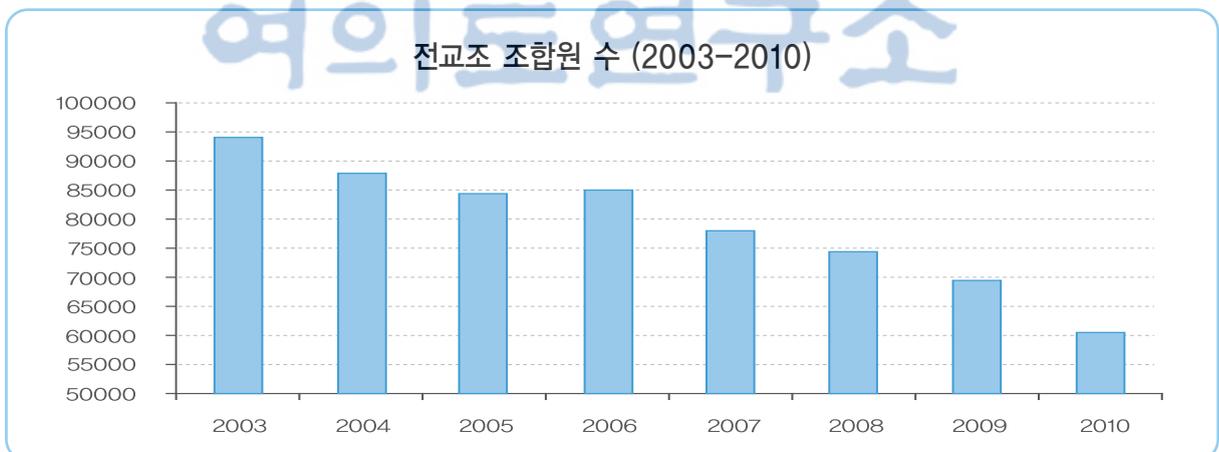
1. 전교조의 변천 과정

- 전교조가 출범하면서 발표하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선언문’은 참교육을 표방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위임받은 **교사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으나, 교사의 기득권 수호와 이념화 및 정치 투쟁에 집중하면서 출범 당시의 취지는 변질되어 왔음.**

☞ 전교조의 교육개혁 반대 및 정치·이념 투쟁 참여¹⁾

연도	교육개혁 반대	정치·이념 투쟁
2002	- 성추행 징계교사의 전보 취소 요구	
2003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폐기 요구	- WTO 세계각료회의 반세계화 투쟁
2004		- 시국선언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 시국선언 (이라크 추가파병 전면 재검토) -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및 선거자금 모금
2005	- 교원평가 반대를 위한 찬반 투표	
2006	- 교원평가 및 차등성과급 지급 반대	
2007	- 사립학교법 재개정 저지 (민노총 연대) *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교사 선언 - 이랜드 사태 연대 투쟁 (민노총 산하 노조)
2008	- 학업성취도 및 교원 평가 저지 투쟁	
2009		- 쌍용차 구조조정 분쇄 투쟁 대회
2010	- MB 교육정책중단 전국교사대회	- 민노당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

- 전교조의 이념편향 및 정치 투쟁의 지속으로 **2003년 이후 조합원수가 급감**하였으며, 이는 **교원들의 전반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임.



1) 조전혁·홍진표 (2006.11),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기파랑
<http://news.chosun.dot.com> 기사 검색 (2007.09.11, 2008.09.01, 2009.08.24, 2009.09.07, 2010.05.06 등)

2. 전교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중앙일보(2004/04, 전국 1,051명 대상)
‘반전평화 계기 교육자료집’ 등 전교조의 반전 수업에 대해 56.9%가 ‘부정적’으로 응답함.²⁾
 - 교육부(2007/09, 전국 1,000명 대상)
국민의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했으나, 평가대상인 교원단체의 반대로 법제화에 난항을 겪음.³⁾
 - 노동연구원(2009/10, 전국 1000명 대상)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없다’는 응답이 42%인 반면 ‘있다’는 응답은 17.2%에 그침.⁴⁾

3. 전교조 관련 실증분석 결과

- **실증 분석 결과 전교조 교사비율과 수능성적 간의 상관관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음.⁵⁾

전교조 교사비율 10% ↑ ⇒ 수능 백분위점수 : (언어) 1.1~1.3점 ↓, (외국어) 1.5~2점 ↓↓

- 전교조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비판하면서 자체 분석을 제시하였으나, 정확한 상관관계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⁶⁾
 - **전교조의 분석에서도 전교조비율과 수능성적 간의 상관관계는 모든영역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음.
- ☞ **가구와 지역 특성이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을 신장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교육개혁에 전교조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음.**

2) 전호민, “전교조, 노골적 파병반대 선동”, 네이버뉴스, 2004/06/29

3) “[MB회견-이슈별 분석] 3. 교원평가제 법제화”, 서울신문, 2008/04/14

4) 이장원, “교원노동조합 활동의 사회적 적합성과 발전 방안”, 노동연구원 토론회 발표자료 4 (2010/01/19)

5) 이인재, “교원노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노동연구원 토론회 발표자료 3 (2010/01/19)

- 2004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에 조사된 고등학교 3학년 2,000명의 개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생 수능성적과 전교조가입 교사비율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음.

6) “수능성적과 부모학력, 주택가격, 교원단체-교원노조 가입교사의 상관관계 분석”, <보도자료>, (2010/05/10)

- 시·군·구별 평균치 간의 단순상관관계만을 분석함으로써, 개인, 가구 및 학교 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변수의 통제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분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II.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의 필요성

1. 비대칭 정보 : 도덕적 해이와 질적 저하

- 초·중·고 교육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의 수요자이며 **교사는 교육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바, 대리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음.
 - **도덕적 해이** : 선량한 관리자의 책무를 다하도록 **감독과 임금체계 등 적합한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함.**
 - **역선택** : 교사 개인의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로 부족으로 인해 노력할 유인이 미흡하고, 우수인재가 교단 진입을 외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사의 질적 저하 문제는 교사의 성과 관련 정보의 공시 및 선택권 부여로 해결**할 수 있음.
- ☞ 성과 정보 공시, 선택권 부여, 성과급 보상체계 등 비대칭 정보에 대한 해결책은 **여타 노동시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전교조는 반대를 지속**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자의적인 교권의 남용 등 **대리인으로서 책임은 실종되고 권한만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음.

2. 현행 법령 및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

- 교원은 **공무원 지위는 유지하면서 여타 공무원과는 다른 ‘특별법’에 의거해 정부 정책의 방향과 내용까지 좌우할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보호를 빌미로 공익을 위한 공개까지 거부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
 - ‘교원노조법’의 강력한 단체협약 체결권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시정하기 위한 교원평가와 성과급 보상체계 도입이 난항을 겪음.⁷⁾

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초월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제6조 ①항은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교원 노조의 광범위한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

- 교원의 개인정보 공시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시 개별학교 명칭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 교육 정보공개 관련 제한이 일반 공공기관보다 과도하여 선택과 경쟁에 의한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⁸⁾
- ‘특별법’의 도입으로 **감독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개시 책임 문제로 인해 관련 **부처 또한 비공개를 선호**하는 등 정치적 담합의 성격도 있어 **감독에 한계가 있음.**⁹⁾
 - 교육부는 수능성적의 공개에 반대·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¹⁰⁾
- 전교조는 **조직화된 소수의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통해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어 **법제화 과정상 압묵적인 다수가 억압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내신으로 인해 ‘을’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어서 주인으로써 권리 행사는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음.

3. 정보 비공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 국가예산 대비 **공교육비의 비중과 총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체성 교육(사교육, 유학·연수)의 급증**이 관찰됨에 따라 **비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인한 과다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
 - 2000년~2006년 기간 중 공교육비의 총액 및 국가예산 비중 증가¹¹⁾
 - 공교육비/국가예산 : 34.4%(’01년) → 38.2%(’03년) → 35.4%(’07년)
 - 공교육비 총액 : 35조원(’01년) → 46조원(’03년) → 56조원(’07년)
- ☞ **교육의 질적인 개선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교육비의 증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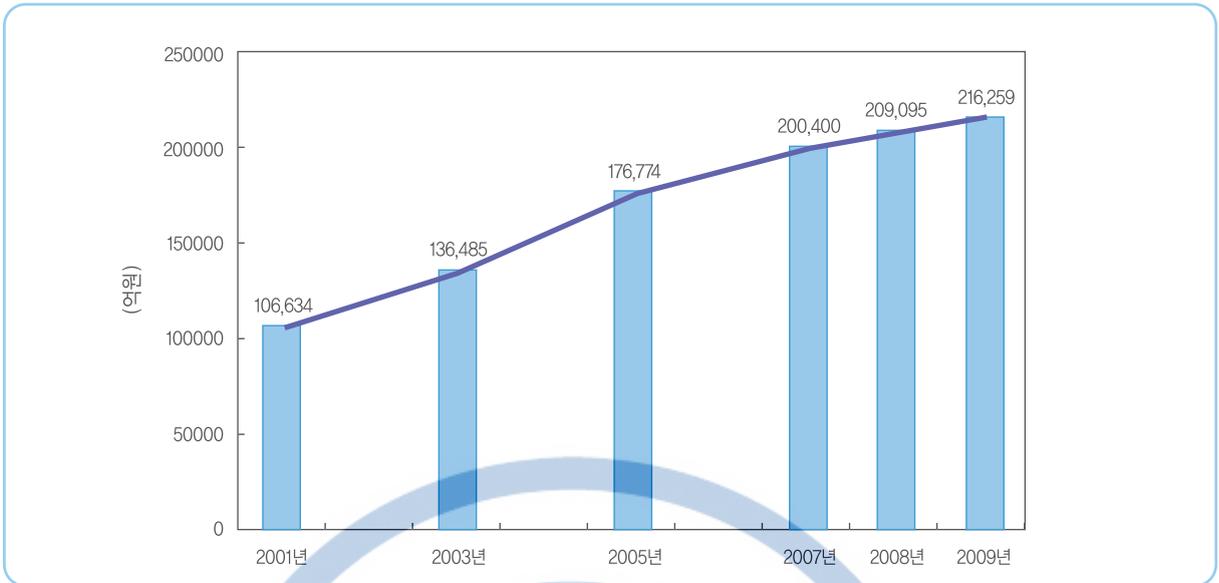
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3조 ②항에서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제5조 15. ②항에서 학교명 공개를 금지하는 등 목적의 달성은 매우 미흡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장 제9조 6. 다. 를 통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생활 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예외 조항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음.

9) 조전혁·홍진표 (2006) 전거서, p27, p60, p96

10) 교육부는 2006.9월 행정법원의 연구목적을 위한 수능성적 공개 판결에도 항소할 의향을 표명한 바 있으며, 2010.2월 대법원의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 판결에도 신중한 입장 [MBC 뉴스, 2006/09/08, 2010/02/25]

11)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 2000년~2006년 기간 중 사교육비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음.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대책팀), 「2009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2010.02.23

- **공교육의 실패로 인한 피해**는 사교육과 유학 등으로 대체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특히 심각**하며, 따라서 **전교조의 교육 개혁 반대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당성을 찾기 어려움.**
- 또한, 전교조의 ‘계기수업’으로 인한 **국가관 실종과 이념 편향적 교육**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국가 및 개인의 위험을 증대**해 왔음.
 - 교사는 개인적인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강제할 권리가 없지만¹²⁾, 교사가 강제할 경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단이 없음.
 - ‘계기수업’을 감독하기 위한 교육부처의 노력도 미흡한 상황임.¹³⁾
- ☞ 교사는 교육의 위임을 맡은 **대리인으로써 직무 수행 현황에 대해 주인에게 설명할 의무 (Accountability)**가 있지만,
 - 전교조는 조합원에게 수업자료만 제공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수업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학부모의 우려는 누적되고 있음.

12)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생의 학습권)

13) 조전혁 · 홍진표 (2006), 상계서, p96

III. 결론 :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필요성

- 공교육 실패로 인해 발생해온 장·단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 등 교육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
 - 하지만 전교조의 업무방해로 실질적인 개혁이 지연되어 왔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 및 사회 통합 차원의 우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법령은 전교조 등 조직화된 소수 이익집단의 이해가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감독의 실효성도 미흡한 상황임.
 - 그러나 약자의 입장에 있는 학부모 및 학생은 학습권을 적극 주장하고 보호받는데 한계가 있음.
-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써 헌법 제46조에 의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사회적 갈등을 최소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교조 명단 공개와 국민에 의한 감시 강화가 불가피하며,
 - 교사 개인의 사생활 정보 보호 등 법적인 문제가 있으나, 이는 과거 10여 년간 누적되어 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공익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섭 및 체결 권한은 책무에 비하여 과도하므로,
 - 정책 집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축소함으로써 책임과 권한 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임.



첨부자료 : 미국과 영국의 사례

1. 미국 : 교육 개혁과 정보 공개

- 미국의 대표적인 교원노조는 조합원 수가 320만명(2006년 기준)에 달하는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와 조합원이 86만명(2008년 기준)에 달하는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로 양분되어 있으며, 특히 NEA의 교육개혁 저지 및 불법 정치활동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¹⁴⁾
 - NEA는 1926년 결성된 이후 공립학교 인종분리 정책을 반대하는 등 진보적인 단체로서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 1990년대 중반 이후 학생보다는 **교사의 기득권 수호**(성추행 교사 옹호 포함), **정부의 교육개혁 반대**(학력평가, 교원평가 및 성과급), **교육 외 정치활동의 과다**, **특정 정당에 불법적인 지지와 현금 등으로 우파는 물론이고 좌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급증함**.¹⁵⁾
- 미국 정부의 교육개혁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실패했다는 우려도 존재하나, 차터스쿨 등 성공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우수교사의 육성, 객관적 평가지표와 환류)을 강구하고 있음.¹⁶⁾
 - 교육은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부모의 소통 방법,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학습태도 등 육아 시기부터 가정교육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 신장 한계는 인정하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결과, **'부모의 영향보다 교사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실증 분석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우수교사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 중임.¹⁷⁾
- NEA의 **교육개혁 반대 등 기득권층의 조직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뉴욕과 워싱턴 DC에서는 **시장에게 인사권 등 교육 부문 통제권을 부여한 결과, 학력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음.¹⁸⁾

14)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Education_Association

15) Taylor-Rosario (2009.7), "National Teachers' Unions and the Struggle over School Reform", Citizens' Commission on Civil Rights

16) Tough, P. (2006/11/26), "What It Takes to Make a Student", *The New York Times Magazine*

17) Nye-Konstantopoulos-Hedges (2004), "How Large are Teacher Effects?"

Green, E. (2010/03/02), "Building a Better Teacher", *The New York Times Magazine*

18) Loveless, T. (2007/12), "How Well are American Students Learning", Brookings Institute

"Michelle Rhee Threatens End-Run Around Teachers' Union", *Huntington Post*, 2010/05/03

- 노동조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재무적 정보는 1959년 도입된 ‘노사관계 보고 및 공개법’ (LMRDA, Labor-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에 의거, 민간 부문의 노조는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공공 부문 노조의 경우에는 면제되어 있었음.
 -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의 협상과 재정**은 공적자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에 의거, 재무적 투명성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¹⁹⁾
 - 지출 항목별 상세 내역을 포함한 재무보고서를 매년 제출
 - 제출보고서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의 특별조사권
 - ☞ **우리나라 교원노조의 경우 재무정보의 제출 의무는 미흡한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노조법을 적용²⁰⁾
 - 미국의 공공부문 노조는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거, **광범위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적인 정보도 포함**됨.
 - FOIA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으로서 연방정부기관의 정보공개에 적용 (주 정부기관은 주에 따라 상이)
 - 미시간 주에서는 **교직원 개인의 성과 및 평가, 상벌과 민원** 등을 개인의 사적인 정보로 분류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개 정보**임.²¹⁾
 - ☞ **최근 펜실바니아 주는 교원노조의 명단을 공개 정보로 분류**하였음.
 - 2010.2.2일 펜실바니아 주 공개기록국(Office of Open Records)은 ‘알권리법’ (Right to Know Law, FOIA의 주 법에 해당)에 의거, **교원노조인 ‘펜실바니아 교육협회’ (PSEA) 회원 명부를 공개**함.²²⁾
 - 일단 공개되면 공개신청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됨.
 - 펜실바니아의 경우 **교원의 연봉, 기타 보상, 기간 등 개인적인 고용계약 관련 정보**도 사적인 정보가 아닌 공개 정보에 포함됨.²³⁾
- ※ 참고로 펜실바니아의 정보공개 순위('08년)는 51개 주 중 22위로 중상위권 수준²⁴⁾

19) http://www.affwa.org/main/article.php?article_id=2209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21) Bradley v Saranac Community Schools Board of Education, 455 Mich 285; 565 NW2d 650 (1997)

22) PSEA(Pennsylvania State Education Association)와 공개기록국 간 교신의 하기 공개 내용을 참조
http://openrecords.state.pa.us/portal/...pt/.../union_due_and_fair_share_payers_pdf

23) <http://www.psea.org/general.aspx?id=4216>

24) http://www.bettergov.org/pdfs/foia_results_2008.pdf

2. 영국 : BNP 당원 명부의 유출

- BNP(영국국민당, British National Party)는 1981년 결성된 **영국의 극우파 정당**으로 2008.11.18일 **당원 12,000여명의 명부(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거주지 포함)가 Wikileaks(<http://wikileaks.org>)에 유출됨.**²⁵⁾
 - 영국 경찰과 정보 당국은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의거, 2008.12월 당원인 Smith 부부를 **'민감한 정보'의 유출 혐의로 구속**
- 공개된 당원 명부에 **현직 교사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의 교권 지속 허용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바 있음.
 - **여교사교장협회(NASUWT,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Union of Women Teachers)** 사무총장은 **BNP 당원의 교직과 공직 수행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²⁶⁾
 - 교사와 공무원은 견해와 직무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BNP 가입이 허용되나, **교사 직무의 특성상 중립 유지는 불가능**²⁷⁾
 - 영국의 아동·학교·가족부는 외부 평가보고서의 연구결과에 의거, BNP 가입 교사의 교육은 허용하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매년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²⁸⁾
 - 그러나 NASUWT는 **'취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극단적 견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BNP 가입 교사의 교육 지속 허용은 부적합하다'**고 주장²⁹⁾
- ☞ 법원은 민감한 정보의 유출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 등 정보보호법의 위반은 있으나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경미한 수준의 **'벌금 200 파운드 및 기소비용 100 파운드' 만을 지불하라고 판결**함.³⁰⁾

여의도연구소

25) http://en.wikipedia.org/wiki/British_National_Party

26) Morris 외, "Union : 'Ban Teachers who are BNP Supporters' ", *The Independent*, 2008/11/20

27) "Abridging Freedom of Speech & the Right of the People to Peaceably Assembly", 2008/11/20
"BNP Membership Incompatible with Role of Teacher", *Hope not Hate News*, 2010/04/06

28) "No BNP Membership Ban for UK Teachers, Review Concludes", *inthenews.co.uk*, 2010/03/12

29) "Teachers will Not be Banned from BNP Membership", *New Statesman*, 2010/03/12

30) http://en.wikipedia.org/wiki/British_National_Party

○ 전교조 사건에 대한 해외 사례들의 시사점 ○

1. 미국 : 교육 개혁과 정보 공개

- 교원노조의 과도한 정치적 참여, 기득권 수호를 위한 조직적인 저항, 이로 인한 정책 집행 효율의 저하, 교원의 공무원 신분 등 미국의 교육개혁 및 정보공개 사례와 전교조 사건은 많은 유사성을 공유
- 미국의 뉴욕 및 워싱턴 D.C.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장에게 교육예산의 배분 및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교원의 직무상 개인적 가치와 교육의 분리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경우 교원의 정보 공개는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원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 ‘민감 정보’ 또한 공개 대상에 포함할 필요

2. 영국 : BNP 당원 명부의 유출

- 극단적인 견해, 과격한 투쟁전략, 민감한 회원 정보의 비자발적 유출, 명단 공개의 공익성 등 BNP와 전교조 사건은 많은 유사성을 공유
- BNP 사건은 성명 이외의 다양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었고(이메일, 전화번호, 거주지 등), 명부가 공개된 당원들에 대한 신체적인 위협이 크며, 면책특권과 공익의 대표성이 없는 일반인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이었음.
- BNP 명단 유출 관련 판결은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판결보다 무거워야 공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BNP사건 관련 벌금은 300파운드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된 벌금으로 하루 3천만원을 부과한 것은 매우 과도하다고 사료됨.



여의도연구소

〈Issue Brief〉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것입니다.

〈Issue Brief〉에 개진된 내용은 한나라당 및 여의도연구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재) 여의도연구소
www.ydi.or.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기계회관 신관 3층
TEL · 02-2070-3303 FAX · 02-2070-3331